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7-03

대 구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4누62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
원고, 피항소인 [redacted] 주식회사

피고, 항소인 [redacted]시장

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4. 9. 5. 선고 2014구합20980 판결

변 론 종 결 2014. 12. 12.

판 결 선 고 2015. 1. 16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'농어촌특별세 7,443,310원'을 '농어촌특별세 7,444,310원'으로 경정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4. 2. 10.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(소장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7-03

의 청구취지 기재 농어촌특별세 7,443,310원은 7,444,310원의 오기로 보인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'A, B, C'를 '[redacted]건설, [redacted]건설'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부터 제10행까지의 '제105조 제2항'을 '제105조 제2항(2011. 11. 1. 이후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에서는 제7조 제2항)'으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5행의 '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'를 '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(2011. 11. 1. 이후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에서는 제9조 제3항)'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7행의 '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5항'을 '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5항(2010. 3. 31. 제정되어 2011. 11. 1.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제34조 제1항)'으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6행 및 제8쪽 제12행의 각 '지방세법'을 각 '구 지방세법'으로 고친다.

2. 결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7-03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,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'농어촌특별세 7,443,310원'은 '농어촌특별세 7,444,310원'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사공영진

판사 채 정 선

판사 박 정 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7-03

별지

목 록

(금액단위: 원)

순번	과세대상 부동산		세목			증거
	부동산	비고	취득세	지방교육세	농어촌특별세	
1	[redacted]시 [redacted]동 [redacted]외 [redacted]필지 (①토지)	분양분	74,443,260		7,444,310	갑 제6호증의 1
2		미분양분	178,912,960		17,891,290	갑 제6호증의 2
3	[redacted]시 [redacted]동 [redacted]외 [redacted]필지 (②토지)	분양분	230,233,770	21,435,430	11,511,670	갑 제6호증의 3
4		미분양분	1,292,910	120,360	64,630	갑 제6호증의 4

끝.